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1. 12 선고 2017가단6563 판결 [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12. 8.

판결 선고 2018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29m²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축택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1m²,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1m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대지를 주문 제1항㉔ 부분 1㎡, ㉔ 부분 1㎡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므로 침범한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와 침범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박재경

별지